

## 제 안 설명서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	-----

제출년월일 : 2000. 10.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정이유

우리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다. 사이버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 라. 주민참여를 위한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행자부 표준안 : 도 정통12410-10510 (2000. 7. 31)호 사본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장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전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 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9회 - 총무 제1차)

부서	제작부서	제작자	제작일	제작장소	제작설명
제작자	제작장소	제작설명	제작일	제작부서	부서
제작자 : 김성현 (010-1234-5678)   제작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대동 123번지   제작설명 : 대구광역시 동구 대동 123번지에 위치한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시민회관 축제를 주제로 한 축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1. 차정 12410-684(2000. 7. 26) 출판권법입니다.

2. 시드니 작품권법에서 스웨덴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물일 : 관리보조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계약(한조례(三주례)) 1부  
전자결재시스템 “서울은 알파” 개설 등

## 경상특도지사

卷之三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2 0 0 . 7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자치정보화담당관실)

##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달하고자 함

#### □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ID 보급 등
-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 제시

#### □ 추진경위

-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관련 자료 취합·분석 : 2000. 4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초안작성 : 2000. 5 ~ 6
- 관련부서(행자부), 시도 및 사군구에 표준안 의견수렴 : 2000. 7

※ 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현황(2000. 6월 현재)

현황	계	시도	시군구	비고
기관 수	248	16	232	
홈페이지구축	245	16	229	잔여 3개기관도 현재 구축중임
관련규정제정	37	10	27	

조례 표준안 구성내용

장 별	조문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3장 사이버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9조(비밀번호관리)

행정사항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시행
  - 각 자치단체별로 인터넷 관련 조례 제정·운영

##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및 시·군·구(이하 '자치단체'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2조 및 자치 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자치단체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자치단체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자치단체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자치단체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자치단체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자치단체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② 자치단체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자치단체장은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자치단체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발 췌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11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 ~ ④<생략>

⑤ 이 영에서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상담·신청·접수·교부·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⑥<생략>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생략>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 8.<생략>

##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49호(2000년 9월 4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0년 9월 4일 ~ 2000년 9월 25일(21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39호
- 의 안 명 :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실

### 2. 제안이유

우리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다. 사이버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 라. 주민참여를 위한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 4. 검토의견

-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1장 총칙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안 제3조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4조는 인터넷시스템 개선, 안 제5조는 홈페이지 정보관리, 안 제6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안 제7조는 홈페이지 자료제공,
-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 안 제8조는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안 제9조는 인터넷 민원처리, 안 제10조는 민원처리 공개, 안 제11조는 민원상담 기능 제공,
-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안 제12조는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안 제13조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 안 제14조는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안 제15조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안 제16조는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안 제17조는 개인정보보호, 안 제18조는 시스템의 안전대책 강구, 안 제19조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2000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 21C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